

### ※ 영사 확인이란?

-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문서의 국외사용을 위한 인증 필요
- 일반적으로 문서가 사용될 국가가 자국의 해외공관에서 '영사확인'이라는 이름으로 문서를 확인
- 일반적으로 재외공관에 '영사확인'을 받고자하면 해당국의 외교부에서 '영사확인'을 받아오도록 요구함

### ※ 아포스티유란?

문서발행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자국문서를 확인하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들은 자국의 해외공관이 현지 국가가 발행한 문서에 대한 추가적 확인없이 자국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'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'

### ※ 아포스티유 확인 절차

1. 공문서
    - 가. 공문서 발급
      - 번역문 첨부
      - 기관장 직인, 서명 또는 날인
    - 나. 해당국가 외교부 또는 아포스티유 발급기관 확인(Apostille 부착) 후 제출
  2. 공증문서
    - 가. 외국의 법에 의해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가 공증한 문서(번역문 첨부)
    - 나. 해당국가 외교부 또는 아포스티유 발급기관 확인(Apostille 부착) 후 제출
- ※ 외교부 해외안전여행(<http://www.0404.go.kr>)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

### 협약에 의한 APOSTILLE 확인서 양식

<p>APOSTILLE (Convention de La Haye du 5 octobre 1961)</p>	
<p>1. Country : 국가 This public document</p>	
<p>2. has been signed by ( ① )</p>	
<p>3. acting in the capacity of ( ② )</p>	
<p>4. bears the seal/stamp of ( ③ )</p>	
Certified	
<p>5. at ( ④ )</p>	
<p>6. ( ⑤ )</p>	
<p>7. by ( ⑥ )</p>	
<p>8. No( ⑦ )</p>	
<p>9. Seal/stamp</p>	
<p>10. Signature</p>	
( ⑧ )	( ⑨ )